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시행 2014.2.19  
[총리령 제1066호, 2014.2.19, 일부개정]

## >> 제 · 개정이유

### [일부개정]

####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품질 향상을 위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축산물의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일괄 적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와 축산물을 출하하는 자 등이 축산물의 위생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공포(법률 제11989호, 2013. 7. 30. 공포, 2014. 1. 31. 시행)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및 신청 절차·방법 등을 마련하고, 가축을 출하하기 전 일정 시간동안 음식물 또는 인체에 유해한 약물의 투여를 금지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수출 축산물의 위생증명서 발급(안 제4조 신설)  
축산물의 수출 증대 및 축산산업의 국제화에 이바

지하기 위하여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축산물의 위생을 증명하기 위하여 위생증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함.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 확대 및 적정성 평가 방법 마련(안 제7조제2항 및 별표2 의2)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어린이가 많이 소비하는 품목인 유가공품을 생산하는 유가공업 영업자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대상 영업자로 추가하고, 새로이 의무 적용 작업장이 된 집유장과 유가공장에 대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적정성 평가방법을 정함.

다.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의 적용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안 제7조의3)  
1)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자를 축산업협동조합, 농업경영체 및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 영업자로 정함.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받으려는 자는 인증신청서에 전담조직의 운영규정, 통합관리프로그램 및 그 운용실적,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과 각각 체결한 계약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인증 신청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함. 3) 인증 신청자는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있어야 하고, 인증에 참여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은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어야 하는 등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요건을 정함.

라. 가축 및 원유·식용란의 출하 전 준수사항(안 제18조의2 신설)  
위생적인 가축의 도살·처리를 위하여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가금류는 3시간 이상) 물을 제외한 먹이의 섭취를

중지시키고, 인체에 유해한 약물이 축산물에 잔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축 및 원유·식용란을 출하할 때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하는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하도록 하는 등 축산물의 출하 전 준수사항을 마련함.

〈법제처 제공〉

**【제·개정문】**

◎ 총리령 제1066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4년 2월 19일

국무총리 (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조의2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같은 조 제2항”을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하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이 법 제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수출업자를 위한 위생증명서의 발급)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수입자가 요구하는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따라 축산물을 수출하는 자가 해당 축산물이 그 기준,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 적합한 것임을 증명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위생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생증명서의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작성·운용 등)”을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운용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운용”을 “안전관리인증기준 운용”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단서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를 “법 제9조제2항 본문에서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3호나목에 따른 유가공업의 영업자를 말하며, 법 제9조제2항 단서에서”로 한다.

제7조의6을 삭제하고, 제7조의3을 제7조의6으로 하며, 제7조의2를 제7조의3으로 하고,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시·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자체안전관

## :: 축산법령

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는 영업자가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의2서식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7조의3(종전의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3(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법 제9조의5에 따른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장(이하 “인증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영업자·종업원·농업인의 교육훈련 수료증 사본
3. 최근 3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 다만, 3개월간의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최근 1개월간의 생산 또는 영업 실적으로 갈음할 수 있다.
4.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하기 위한 위생관리프로그램(이하 “위생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5. 업종별 또는 품목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1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용하고 있을 것
2.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용하고 있을 것
3. 제7조의4제3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에서 영업자 및 농업인은 4시간 이상, 종업원은 24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다만, 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축산물운반업·식육판매업·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종업원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하며, 이 경우 영업자가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은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법 제9조제4항 전단에서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체
3. 축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50억원 이상인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자

④ 법 제9조제4항 전단에 따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인증(이하 “통합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의 안전관리인증기준을 관리·운용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규정
3. 통합적인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을 위한 통합관리프로그램(이하 “통합관리프로그램”이라

한다) 및 3개월 이상의 운용실적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업소·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 다만, 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의 경우에는 그 인증서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작성·운영하고 있을 것  
2.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가공·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하는 축산물의 특성에 따라 관계되는 모든 작업장·업소·농장과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할 것. 이 경우 그 계약에는 각 작업장·업소·농장이 통합관리프로그램을 준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각 계약기간은 3년 이상이어야 한다.

3.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자신이 인증 참여 작업장·업소·농장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위생관리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을 것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은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고 있을 것

5.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자·농업인 및 종업원은 모두 제2항제3호에 따른 교육훈련을 수료하였을 것

⑥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을 신청한 자가 제2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⑦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모두가 제5항의 요건을 갖추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기존에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작업장·업소·농장은 제외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⑧ 법 제9조제5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이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 또는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이하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이라 한다)로 인증받은 사항 또는 중요관리점을 변경하려는 경우(법 제26조 또는 「축산법」 제24조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따라 영업자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로서 종업원의 고용을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변경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7서식의 인증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

## :: 축산법령

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인증원장은 제8항에 따라 변경신청을 받으면 서류검토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변경사항을 확인하고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서 또는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⑩ 인증원장은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또는 변경 인증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을 말한다),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의4, 제7조의5, 제7조의8 및 제7조의9를 각각 제7조의8, 제7조의4, 제7조의9 및 제7조의5로 한다.

제7조의4(종전의 제7조의5)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도축업의 영업자 및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받은”을 “법 제9조제8항에 따라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여야 하는 영업자 및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을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본문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7조의2제2항제3호”를 “제7조의3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5항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14항제3호”를 “법 제9조제10항제4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5(종전의 제7조의9)의 제목 중 “지정”을 “인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기준원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을”을 “인증원장은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을”로,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의”를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지정의”를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안전관리인증업소·안전관리인증농장의 인증”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작업장(업소·농장) 지정(연장) 신청서”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로,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5(종전의 제7조의9)제3항제1호 중 “영업허가(신고)증”을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으로, “축산업등록증”을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지정서”를 “인증서”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의4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7조의3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영업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사본(농업인인 경우에는 축산업 허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이나 그 밖에 가축을 사육하는 농업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 및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의 인증서 사본

4. 통합인증에 참여하는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과 체결한 계약서 사본

⑤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합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한 자 및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 모두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다고 인정되면 신청인에게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HACCP)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인증에 참여한 각각의 작업장·업소·농장(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와 유효기간 만료일이 같은 작업장·업소·농장만 해당한다)의 영업자 또는 농업인에게는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안전관리인증작업장·업소·농장(HACCP) 인증서를 각각 발급한다.

제7조의6(종전의 제7조의3)제1항 중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라 지정”을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인증”으로 하며, 같

은 조 제3항제2호 및 제7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별지 제1호의6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별지 제1호의8서식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집유장”을 “농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및 그 운용의 적정성 여부 조사·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의2에 따른다.

제7조의7의 제목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법 제9조제12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및 그 운용”을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제7조의3제1항”을 “제7조의6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집유장”을 “농장·도축장·집유장”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집유장”을 “농장·도축장·집유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농장·집유장”을 “농장·도축장·집유장”으로, “제7조의3제4항”을 “제7조의6제4항”으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제7조의8(종전의 제7조의4)의 제목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 등)”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으로 하고,

## :: 축산법령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9조제6항 제6호”를 “법 제9조의4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제7조의5제1항”을 “제7조의4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9조제6항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취소”를 “법 제9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을 각각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집유장”을 “농장”으로 한다.

제7조의9(중전의 제7조의8)의 제목“(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에 대한 감독)”을“(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에 대한 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농장·집유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을 “농장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장”으로, “법 제9조의2제6항”을 “법 제9조의5제6항”으로,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한다.

제7조의10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영”으로 한다.

제8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 본문, 제12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얇을”을 “아니하거나 소·돼지·닭·오리를 제외한 가축의 경우로서 정보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불가능한”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검사관 또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책임수의사(이하 “책임수의사”라 한다)는”을 “검사관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1조제1항 본문 및 제12조제1항 본문”을 “법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

1항”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도축검사신청서를 서면으로 제출받은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검사관·책임수의사 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를 “검사관 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이 법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5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검사에 불합격한”을 “법 제31조의2에 따른 회수대상 축산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으로 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출하 전에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하기 전 12시간 이상 절식(絶食)할 것. 다만, 가금류는 3시간 이상으로

하며, 물은 제외한다.

2.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46조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고시한 동물용의약품 안전사용기준 중 휴약기간 및 출하제한기간을 준수할 것

②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원유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축산물”이란 원유와 식용란을 말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법 제13조제2항”을 “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1호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별지 제13호서식의 수거검사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최종 기재일부터 3년간 보관하게 하여야”를 “그 내용을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정보시스템에 기록하게 하여야”로 한다.

제27조, 제28조 및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의 규정을 각각 삭제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도축업 및 집유업”을 “집

유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유통기간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작성한 유통기간의 설정 사유서

제4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가족관계증명서 및 인감증명서”를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양도인”을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양도인”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농장·집유장 지정취소”를 “농장 인증취소”로, “법 제20조, 제27조”를 “법 제27조”로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제1군감염병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9조제1항 중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가”를 “검사관이”로, “검사관 및 책임수의사는”을 “검사관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

## :: 축산법령

업자의 교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추가되는 영업장소가 종전의 영업장소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장소 또는 같은 건물에서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을 추가로 개설한 경우: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축산물판매업 또는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 생략(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자가 매년 받아야 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통합인증업체의 인증”으로, “지정”을 “인증”으로 한다.

제54조의3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검사관 또는 축산물위생감시원이 법 제36조제1항 또는 이 조 제3항에 따라 축산물을 압류할 때에는 해당 축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압류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압류 대상 축산물을 영업장 내 일정구역에 구분·보관하도록 하고 별지 제36

호의2서식의 압류확인서를 작성하여 압류 대상 축산물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기준원장”을 “인증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지정”을 “법 제9조 및 제9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 인증”으로, “지정 변경”을 “인증 변경”으로 한다.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한다.

제57조제1항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제58조의2제4항제2호 중 “오소리 및 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제59조제1항 중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의 지정 및 제7조의9에 따른 지정”을 “제7조의3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변경 인증 및 제7조의5에 따른 인증”으로, “기준원장”을 각각 “인증원장”으로, “농장·집유장”을 “농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의5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제7조의4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1호”를 “제10호”로, “검사, 신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을 신청하는 자는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검사를 받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제6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7조제3항제1호”를 “제47조제3항제2호”로 한다.

별표 1 제1호나목5)바) 중 “위생적인 용기에 담는다”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목 5)사) 중 “전용 위생용기에 담는다”를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위생적인 용기에 담거나 포장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목 6)가)부터 다)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절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표 1 제1호나목6)다)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5호나목 중 “사용하기 위하여 도살처리하는”을 “사용하거나 종교적 이유로 달리 도살·처리할 필요가 있는”으로 한다.

다만,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의 도체는 그 특성에 따라 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제3호나목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2의2의 제목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기준 및 절차등(제7조의6관련)”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적정성 여부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제7조의6제5항 관련)”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작성·운영하는 도축업 영업자의 도축장”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운영하는 도축업·집유업·유가공업 영업자의 작업장”으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평가기준

가. 도축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도축검사 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도축장내 식육포장비율,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도축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 실태	도축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나. 집유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집유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집유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 실태	집유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다. 유가공장

구분	평가항목
인프라 구축 정도	유가공장의 생산라인, 구내 조경, 민원·악취 발생, 폐수처리, 실험실 구축 및 실험자 능력 정도, 유가공장의 전체 면적 등
자체안전관리 인증기준 운용 실태	유가공장의 위생관리, 시설관리, 위해요소의 분석, 중요관리점의 감시 등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의 운용 실태

∴ 축산법령

별표 3 제2호가목(2)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사슴  
간·폐 및 두부와 그 인근 림프절을 절개하여 검사한다.

별표 3의2 제2호나목 중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제2항”을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나목”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6 제2호가목 중 식용란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6개”를 “6개 또는 800(g, ml)”로 한다.

축산물의 종류	채취·수거량 (단위)	비고
식육·포장육	500(g)	
원유	500(ml)	농가별 채취량은 20ml
식용란	20(개)	
식육가공품	500(g, ml)	
유가공품	500(g, ml)	
알가공품	200(g, ml)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 (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및 같은 호 다목(3) 중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으로 한다.

별표 9 제2호다목 및 같은 표 제3호다목 중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을 각각 “축산물 시험·검사기

관”으로 한다.

별표 9의2 및 별표 9의3을 각각 삭제한다.

별표 10 제1호가목(1)(차)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 (2)(가)12) 및 (2)(라)12) 중 “그 재질”을 각각 “내장처리대·내장운반구 및 세척용 수조의 재질”로 하며, 같은 표 제7호가목(1)(가)1) 중 “자가”를 “자가 그 영업을 하는 장소에서”로 하고, 같은 호 나목(1)(마)4) 중 “제5호 나목”을 “제6호나목”으로 한다.

내장처리실에는 장기를 냉각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2호다목 위반행위란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1)부터 9)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및 같은 목1)·7)·9)의 위반행위란 중 “자체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각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2호의2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11항”을 “법 제9조의3제6항”으로, “평가”를 “출입·조사”로 하고, 같은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 중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한다.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위반행위란 중 “법 제13조제2항·제3항·제4항”을 “법 제1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각각 나목부터 라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가. 도축업 영업자에 대한 검사관의 조치 명령 또는 작업중지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13호가목4)를 6)으로 하고, 같은 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며, 같은 목에 2) 및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목6)(종전의 4)의 위반행위란 중 “3)”을 “5)”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5) 제3호마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3호자목6) 위반 행위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로 하고, 같은 표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4. 법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2항 위반				
가.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나. 작성된 자체위생관리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로서				
1)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이상 하지 않거나, 위생점검을 하지 아니하고도 점검표를 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월	영업정지 2개월
2) 자체위생관리기준서에 따라 위생점검을 10일 미만 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축산법령

위반행위	근거법령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다.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라. 작성된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운용하지 않은 경우				
1)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른 중요관리점(CCP)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도 거짓으로 그 기록을 작성한 경우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2)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이상 실시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3) 중요관리점에 대한 모니터링 및 검증을 10일 미만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4) 축산물물의 안전성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거나 중요관리점에 대한 한계기준의 위반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5) 중요관리점에 대한 같은 한계기준을 2회 이상 연속으로 위반한 경우		경고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3개월
6) 계측기구에 대한 검정·교정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7) 1년 이상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8) 그 밖에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경고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9조의3제6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유가공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나목 표의 제11호가목2) 및 3)을 각각 3) 및 4)로 하고,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차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다목 표의 제3호마목6) 위반 행위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

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로 하고, 같은 표의 제9호가목2)부터 6)까지를 각각 3)부터 7)까지로 하며, 같은 목에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별표 11 2. 개별기준 라목 표의 제3호자목6) 위반 행위란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작업장등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 작업장등의”를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으로 인증받지 않고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로 하고, 같은

표의 제9호나목부터 바목까지를 각각 다목부터 사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사목(종전의 바목)의 위반행위란 중 “마목”을 “바목”으로 한다.

나. 별표 13 제1호사목을 위반한 경우		영업정지 7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	--	------------	-------------	-------------

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2) 중 “제2호다목 또는 라목”을 “제2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다목(3)부터 (5)까지를 각각 (4)부터 (6)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별표

11 3. 과징금 제외대상 라목3)부터 6)까지를 각각 4)부터 7)까지로 하고,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2 제1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4호아목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등”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등”으로 하며, 같은 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하. 축산물가공업 중 유가공업의 영업자의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자신이 제조·가공하는 조제유류에 관한 기록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작성·보관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 :: 축산법령

별표 13 제1호에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제3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중 “법 제20조에 따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사. 영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폐기용’으로 표시한 후 냉장·냉동 창고 또는 시설 안의 일정구역에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서.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의 경우에 「식품위생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에 따라 자신이 수입하는 조제유류에 관한 기록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9조제2항에 따른 식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작성·보관 및 관리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 14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4의4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표 14의5 제2호 중 “오소리·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별표 14의6 제2호 중 “오소리·뉴트리아”를 “오소리”로 한다.

별표 16 제2호의 해당법조문란 중 “법 제47조제3항 제1호, 영 별표 4 제2호더목”을 “법 제47조제3항제2호, 영 별표 4 제2호러목”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뒤 쪽, 별지 제7호의2서식 뒤 쪽, 별지 제7호의3서식 뒤 쪽,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7호서식 앞 쪽, 별지 제20호서식 앞 쪽, 별지 제21호서식 앞 쪽, 별

지 제24호서식 앞 쪽, 별지 제27호서식 앞 쪽, 별지 제29호서식, 별지 제36호서식 및 별지 제37호의3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의7서식 및 별지 제1호의8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 쪽의 출하농가란 중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 적용농장”을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하고, 같은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 본문·제12조제1항 본문”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 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8호 중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농장”을 “안전관리인증농장(HACCP)”으로 하고, 같은 서식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검사관 또는 책임수의사”를 “검사관”으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 하며,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 제2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앞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3조제2항”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제3항”으로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 중 “국내외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국외 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하며, 같은 란 제5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고, 같은 서식 뒤 쪽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

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6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 및 별지 제35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하며, 같은 서식 뒤쪽 유의사항란 제5호 중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28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으로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앞쪽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쪽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의 영업양도의 경우란 중 “인감증명서(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를 “인감증명서(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하게 하고, 양도인과 양수인이 허가관청 또는 신고관청에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인감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지 않

## :: 축산법령

을 수 있습니다)”로 하며, 같은 서식 뒤 쪽의 행정처분내용 고지 및 가중처분 대상업소 확인서란 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란 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 제36호의3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36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하며, 별지 제36호의3서식(종전의 별지 제36호의2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 하고, 같은 서식 처리절차란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의2서식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서식 수수료란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축산물위생검사기관의 장”을 “축산물 시험·검사기관의 장”으로 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집유장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의6제4항, 제7조의8제3항, 제7조의9, 제42조제1항, 제5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1일 평균 집유량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작업장의 전년도 총집유량을 실제 집유한 일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1. 1일 평균 집유량이 150톤 이상인 집유장: 2014년 7월 1일
2.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이상 150톤 미만인 집유장: 2015년 1월 1일
3. 1일 평균 집유량이 75톤 미만인 집유장: 2016년 1월 1일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소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에 대한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연매출액은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영업장의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으로 하고, 종업원 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로 한다. 다만, 신규사업·휴업 등으로 전년도 1년간의 총매출액을 산출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실제 운영기간 동안의 총매출액을 1년 단위로 환산하여 산출한다.

1. 연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업소: 2015년 1월 1일
2. 연매출액이 5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21명 이상인 업소: 2016년 1월 1일
3. 연매출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종업원 수가 6명 이상인 업소: 2017년 1월 1일
4.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종업원 수가 5명 이하인 업소: 2018년 1월 1일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축장 또는 책임수의사에 대한 제8조제1항 본문, 제9조제1항·제2항, 제13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18조제1항·제2항, 제30조제1항제2호, 제49조제1항 및 별표 11 2. 개별기준 가목 표의 제4호가목 위반행위란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경우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는 제1항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해당 도축장

의 전년도 1일 평균 도축수로 한다.

1.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8만 마리 초과인 도축장: 2014년 7월 1일
2.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이상 8만 마리 이하인 도축장: 2015년 1월 1일
3. 가축의 1일 평균 도축수가 5만 마리 미만인 도축장: 2016년 1월 1일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 대한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제3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제22조제2항, 제26조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6까지, 제30조제1항제3호, 제37조제1항제2호, 제42조제1항, 제59조제3항, 별표 2 제3호나목, 별표 5 제1호나목(1) 단서, 별표 7 제3호가목(1) 단서, 같은 목(2)부터 (4)까지, 같은 호 나목(2), 같은 호 다목(3), 같은 호 라목, 별표 9 제2호다목, 같은 표 제3호다목, 별표 9의2, 별표 9의3, 별표 12 제4호아목, 별표 13 제4호라목1)부터 3)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5호서식, 같은 서식 수수료란, 별지 제10호서식 뒤쪽의 제출서류란 제1호·제2호, 같은 쪽의 수수료란,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5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5호의6서식까지, 별지 제16호서식 앞 쪽의 첨부서류란 제3호, 별지 제28호서식 첨부서류란 제2호, 별지 제37호의2서식 수수료란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②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7항제1호 및 같은 조 제8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각각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2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제도 운영
6.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제정·개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5조제5항제1호 중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한다.

③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 제48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로 지정받은”을 “「식품위생법」 제48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인증받은”으로 한다.